

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 해결

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필요

☞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학습특별지원금(연 10만원)’을
별도 신청(6월 예정)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 지급할 예정('22. 한시)

※ 신청 기간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교육급여와, 교육비 무엇이 다른가요?



○ 지원기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항목별 지원기준' 참고)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산정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는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기준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① 저소득층 자격 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정 차상위 종류

구 분	내 용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③ 학교장 추천 :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선정

※ 학교장 추천 대상자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 소득·재산 증빙이 어려우나,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 교육비 지원 사업이 필요한 학생 포함 가능



지원기준



교육비 항목별 지원 기준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법정차상위 대상자	○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학교장 추천		○		○		

* 고교학비는 고교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 급식비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지원내용



지원 내용

교육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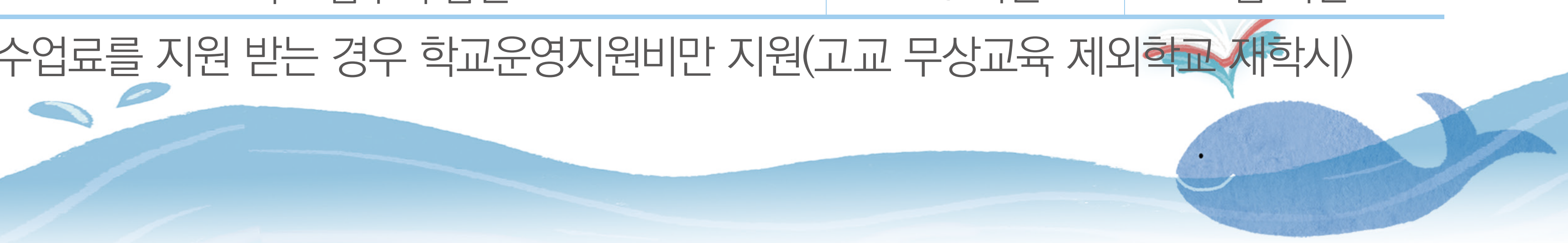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331,000원	-	-
중학생	466,000원	-	-
고등학생	5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원 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육활동지원비는 학부모(학생) 계좌로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입학금·수업료는 학교로 지원(고교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비 포함)
초등학생	-	무상급식	연 60만원 이내 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1회선
중학생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PC 지원	요금 지원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고교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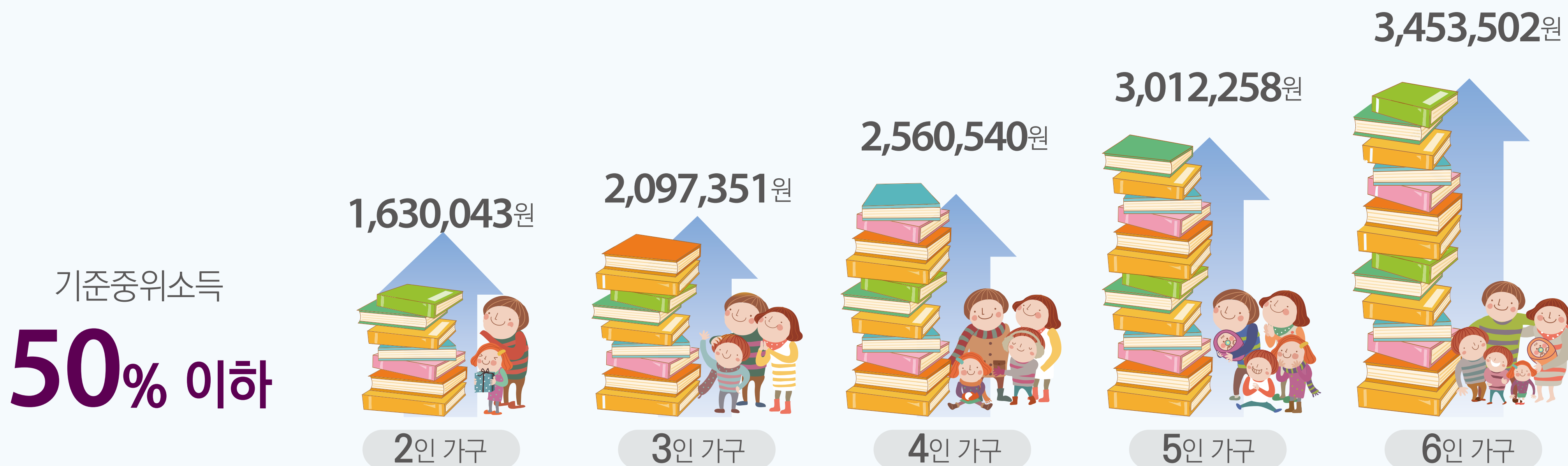


참고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소득
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1)}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2)}$$

(1) 가구의 근로, 사업, 재산, 연금소득 등을 월기준으로 환산

(2) (각종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 재산 : 토지, 주택, 전월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접속

❖ 준비사항 : 공동인증서, 가구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 또는 촬영파일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 031-1396

